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호	3624
-----------	------

2026년 6월 17일
교육 위원 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년 4월 3일, 남궁역 의원
2. 회부일자 : 2026년 4월 7일
3. 상정일자 :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
(2026년 6월 17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남궁역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수영장은 학교 복합시설로서 위탁운영 사례에서 사용료 미납, 운영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운영자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중요해지고 있음.
- 이에 교육감이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,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지속가능성과

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학교복합시설 운영·관리 관련 교육 실시 근거 신설(안 제12조의2)
- 학교복합시설 운영 실태 조사 및 연구 근거 신설(안 제12조의3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3일 남궁역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624호로 발의되어 2026년 4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운영·관리 사무 전반의 효율성과 전문성 증대를 위해 학교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,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전개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2. 주요 검토의견

가.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

- 학교복합시설은 수영장이나 도서관, 평생교육시설, 돌봄교실과 주차장 등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과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설치되고 있지만, 실제 운영에 있어 민간 위탁,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

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- 특히,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학교복합시설 내 체육시설 등에서 일부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회원권 환불이 미이행·지연되거나 공공 요금 체납, 불법적인 시설 증축 등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.
 -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 강남구의 신구초등학교는 교내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보수 과정에서 인허가 없는 불법 증축으로 논란을 빚었고, 이 과정에서 위탁계약 취소와 소송 등이 전개됨에 따라 회원권을 구매한 주민 다수가 피해를 호소하였음.¹⁾
 - 또한, 동대문구의 전곡초등학교에서는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사용료와 수도 요금을 체납하였고, 이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에 쓰여야 할 학교 운영비가 미납한 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출되는 일도 발생하였음.²⁾
- 이러한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둘러싼 갈등이나 현안 발생 시 시설의 운영 전반을 일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장, 업무담당자 등의 역할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해서는 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 - 학교가 해당 업체의 경영상태를 수시로 주민에게 알리고, 업체 경영 상태나 시설 보수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, 사안 발생 시 제도 활동 등을 적극 시행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임.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술한 측면에서 학교장과 직원 등의 학교복합 시설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 전문적인 행정을 유도하고,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리 업무

1) SBS 뉴스(2023.5.5.), [단독] 잘 지어놓고 "철거하라"...학교 수영장에 무슨 일,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180832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SEN D (검색일 2026-04-04)

2)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(2026.2.25.) 참조

전반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서 개정 취지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1) 교육에 관한 검토(안 제12조의2 신설)

- 안 제12조의2는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,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 사무는 민간 사업자와의 계약, 시설물 관리, 자치구나 주민과의 상호 교류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특성상 개별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요구함.
 - 앞에서 살펴본 전곡초등학교의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, 신구초등학교의 수영장 증축 관련 갈등 문제 등은 개별 학교가 학교복합시설 관리에 있어 요구받는 업무 역량과 범위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임.
-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이후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는 학교의 행정실장과 담당자 등의 실무 인력과 교육지원청 재산 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, 관리자(학교장)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여 학교복합시설 관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.

[표-1] 최근 2년간(2024~2025년)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복합시설 설치, 운영 및 관리 관련 교육 현황³⁾

일시	제목	교육내용	참여 실적
2024. 8. 26.(월) 14:00~16:00	학교복합시설 관리자(행정실장)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복합시설의 개념과 현황 소개 ·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어려움 공유 · 현안 관련 토론 및 발표 · 질의응답 및 정리 	교육(지원)청 업무 담당자 9명,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99명 등 108명
2024. 12. 16.(월) 9:30~13:00	학교복합시설(수영장) 관리자(학교장)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계획 안내 · 학교장이 알아야 할 수영장 특정 감사 사례, 학교복합시설팀 업무 안내 · 소송사례를 통한 학교복합시설(수영장) 관리자의 역할과 대응방안 · 학교복합시설 현안 공유 및 정리 	학교 관리자(학교장(감), 행정실장 등 48명
2024. 12. 19.(수) 9:30~13:00	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담당자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수영장 업무 순차 이관 계획 안내 · 학교복합시설 관련 학교 지원 사례, 학교복합시설팀 업무 및 재정지원과 협조 요청 사항 안내 · 학교복합시설 현안 공유 및 정리 	교육(지원)청 업무담당자 25명
2025. 8. 22.(금) 14:00~17:00	학교복합시설 관리자(행정실장)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학교복합시설 현안 공유 및 토의 ·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 추진 방안 · 수영장 사용허가 시 유의사항 안내 등 	교육(지원)청 업무담당자 25명,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71명 등 96명
2025. 10. 16.(목), 17.(금) 8:00~17:30,	학교복합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회복탄력성 강화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청렴교육(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) · 경기도 광주 능평초 능평스포츠센터 등 견학 및 탐방 	교육청 및 학교 행정실장·업무 담당자 53명 등 총 92명
2025. 12. 19.(금) 14:30~17:00	학교복합시설(수영장) 관리자(학교장)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주요 내용 안내 - 학교복합시설 조성·운영 백서 등 · 행정재산 사용허가 매뉴얼 개정 사항, 학교복합시설(수영장) 시설개선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안내 등 	교육(지원)청 업무 담당자 38명,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43명 등 81명

○ 따라서 안 제12조의2 신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복합

3) 시의원(박상혁 의원) 요구자료 제출(626번) (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-2057, 2026.4.14.)

시설 관련 교육활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업무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됨.

2) 조사·연구에 관한 검토(안 제12조의3 신설)

- 또한, 안 제12조의3은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 파악과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.
-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, 연구·자문 등을 수행하게 할 전문기관의 지정 권한을,⁴⁾ 교육감에게 학교복합시설 관련 사무 수행을 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 권한을 부여하여⁵⁾ 사무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.
- 서울시교육청 역시 최근 학교복합시설 관련 현안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교 수영장 점검 및 유지관리 특별 전담 조직(Taskforce) 운영, 학교복합시설 운영 개선과 백서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, 학교시설 공간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며 시설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.⁶⁾

4)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전문기관)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사·분석, 연구·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5)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(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)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(이하 이 조에서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·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
2.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·관리 지원
3.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

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지원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 기준, 지정 취소의 기준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6) 서울시교육청 누리집, 정보공개 > 정책실명제 >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공개 > [공약사업 및 주요정책] (2026-34)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, https://www.sen.go.kr/user/bbs/BD_selectBbs.do?q_bbsSn=1160&q_bbsDocNo=20260309090628720

- 구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11월 관내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운영·관리 사무의 체계화를 꾀하고자 「학교복합시설 조성·운영 백서」를 제작·배포했고,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사안별로 학교 복합시설 관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.

[표-2] 최근 3년간(2023~2025년)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, 운영 및 관리 관련 조사·연구용역 현황⁷⁾

구분	주제	주요내용	연구기간
1	용산고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컨설팅 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목적) 학교복합시설의 비전, 공간 활용, 프로그램, 중장기 발전 방향 등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해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	'24. 5. 22. ~7. 2.
2	전농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컨설팅 용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대상) (용산고) 과학관동, 별관동 등, (전농중) 체육관 등 • (내용) 사업개요, 현황·수요 분석, 사업 필요성 및 건축기본구상(3개안), 운영계획, 조감도, 사업추진 및 관리 계획 등 	'24. 6. 7. ~7. 16.

- 위의 사항을 종합할 때 해당 조문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사·연구 활동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관련 사무 전반의 전문지식을 축적하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업무수행 역량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바, 상위법령의 입법적 취지나 방향과 합치하는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.
- 한편, 서울시교육청은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힘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4618, 2026.4.14.).⁸⁾

(검색일 2026-04-14)

7) 시의원(박상혁 의원) 요구자료 제출(626번) (서울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-2057, 2026.4.14.)

8)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(추가) (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-4618, 2026.4.14.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교육)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,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의3(조사·연구)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·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<u>제12조의2(교육) 교육감은 학교복합 시설이 설치되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,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,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
<p><신 설></p>	<p><u>제12조의3(조사·연구) 교육감은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교복합시설 설치·운영·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·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